#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

2020. 3.

금 융 위 원 회

# ||| 목 차 |||

I . 추진배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Ⅱ. 우리 자본시장의 현황 및 평가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Ⅲ. <b>정책과제 ······</b> 5
1. 기업성장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 정비 6
2. 회수시장 활성화 10
3. 혁신기업 투자 신뢰성 제고 및 인프라 정비14
Ⅳ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
# Ⅰ. 추진배경

- □ 우리 경제는 **노동·자본 투입 중심의 성장모델의 한계에** 직면
  - 이는 모든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현상으로, 지식자본·무형 자산의 축적과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긴요
- □ 무형자산·하이테크 비중이 높은 **혁신기업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**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측면
  - \* (원인) 생존여부에 대한 불확실성, 기술평가 및 시장성 평가 어려움, 담보물 부재
  - **표준화된 여신심사와 고정적인 이자수익 중심**의 은행시스템 에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**투자리스크**를 **감내**하기 **곤란**
  - 혁신기업은 **위험 선호가 다양한 투자자**가 참여하고 **리스크 분산수단**이 풍부한 **자본시장**을 통해 성장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큼
- □ 우리 자본시장은 이러한 **경제구조**에서 요구되는 **역할**을 **충분이 수행하지 못한다**는 평가가 일반적
  - **중소기업의 자금조달**은 은행·정책금융에 **과도하게 의존**하고 있으며, **자본시장** 활용은 **저조**한 상황
    - \* 중기 자금조달 비중(%, '18말) : (대출) 71.5 (정책자금) 18.8 (주식·회사채) 1.0
  - 벤처기업자금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기업들은
    여전히 충분한 규모의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
    - \* 연간 벤처투자공급액(조원): ('14)1.6→('15)2.1→('16)2.2→('17)2.4→('18)3.4
    - \* VC의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(억원) : 한국(17), 미국(150), 중국(220)
  - ◇ "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"을 목표로 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라
    - **자본시장**이 **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**을 보다 적극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**제도적 지원을 강화**

# Ⅱ. 우리 자본시장의 현황 및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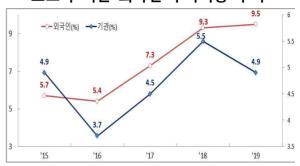
#### 1. 그간의 정책적 노력

- □ 「자본시장 혁신과제」('18.11월)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통해 보다 원활하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추진
  - 혁신·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을 보다 많이,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
    - \* ① 소액공모제도 개편, ② 자산유동화제도 개선, ③ BDC제도 도입
  - 2 리스크가 큰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역량이 있는 투자자군 확대
    - \* ①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② 증권사 투자제약요인 해소, ③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
  - ③ 투자자가 혁신·벤처기업에 대한 **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**하여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·회수제도를 개선
    - \* ① IPO제도 개편, ② 인수제도 개선, ③ 코넥스 시장 역할 재정립
  - ④ 증권사의 차이니즈월·업무위탁 관련 규제를 실질에 맞게 개편 하고, 중기전문(사모) 증권사 제도 도입 등 인가체계 간소화
    - \* ① 증권사 영업행위규제 정비, ② 중소기업 전문증권사 도입, ③ 증권사 인가체계 간소화
- ② 「**혁신금융 추진방안**」("19.3월)을 통해 **자본시장 구조혁신**을 추진
-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에 '혁신성'을 강화<sup>①</sup>하고, 상장절차도 간소화<sup>②</sup>
  - ① 주력 기술 및 사업의 독창성·확장성, 사업화·R&D 역량 등을 심사지표로 활용 ② 외부 기술평가 등급이 우수한 경우 거래소 기술성 심사 면제
- ② 성장지원펀드를 조성(3년간 8조원)하고 대형증권사의 중소·벤처 기업 등 대상 모험자본 공급 확대
- ❸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중권거래세율을 인하(0.05%p)하고 금융세제의 선진화 노력\*을 지속
  - \* 주식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 마련 등(20년 상반기)

## 2. 성 과

- ① 코스닥시장의 **시가총액**, **일평균거래대금**, **기관·외국인**투자 비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
  - < 코스닥 시가총액·일평균거래대금 추이 > < 코스닥 기관·외국인 투자비중 추이 >





- 신규 상장뿐만 아니라 재무성과평가 없이 **기술력과 사업모델의** 미래성장성만으로 진입하는 특례상장 비중이 지속 확대
  - \* 신규상장: ('16년)70개사 ('17년)79개사 ('18년)81개사 ('19년)78개사 비재무요건 상장: ('16년)10개사 ('17년)7개사 ('18년)22개사 ('19년)24개사
  - < 코스닥 상장·자금조달 추이 >



#### < 코스닥시장 비재무요건상장 기업 비중 >



- ② 대형증권사(자기자본 3조원 이상)의 중소·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액이 지속 확대 ('13말 0.08조원 → '19말 1.59조원)
  - \* 모험자본 공급(조원) : (13) 0.08 (14) 0.11 (15) 0.16 (16) 0.26 (17) 0.77 (18) 1.25 (19) 1.59
- ③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(3년간 8조원 공급)
  - \* '18년 2.94조원 조성 → '19년 2.75조원 조성 → '20년 2.5조원 조성 추진
  - \* '19년말 기준 221건 (총 1.4조원) 투자 집행
- 4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성장
  - \* 연간 발행실적(억원) : ('16)174 ('17)280 ('18)304 ('19)367 / 총 585기업 1,124억원

# 3. 아쉬운 점

① 창업(Start-up) → 성장(Scale-up) → 성숙(IPO 등)에 이르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공급 체계에 공백이 존재 □ 혁신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 후 **후속투자\***가 자금 공급주체의 한계\*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함 ※ (Series A) 베타서비스, 시제품 출시단계 → 통상 20억원 수준 (Series B) 시장출시, 마케팅단계 → 통상 30억원~100억원 수준 (Series C~E) 시장점유율 확대, 해외진출 단계 →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\* 민간VC의 규모가 작고, 공적 VC는 개별기업 집중투자가 어려운 점 등 \* 성장단계별 투자금액초/중/후기, 억원: 한국(13/ 18/ 21), 미국(65/ 121/ 250), 중국(64/ 176/ 960) ② 중간 회수시장의 역할이 미미하고, IPO 절차상 공적규제가 강한 점 등으로 혁신기업의 상장(上場)이 여전히 쉽지 않은 측면 □ 초기 투자자의 경우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활성화된 시장이 부재 \* 제도화된 장외시장인 K-OTC 거래대금(40억원)은 코스닥(4조원)의 0.1% 수준 □ 증권회사가 혁신기업을 발굴 • 육성하여 상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\*이 있어 비상장기업 자금공급이 미흡 \* 예) 본인이 5%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IPO 주관 불가 → 종투사의 비상장 기업 투자 금액은 약 1조원으로, 자기자본(33.4조원)의 2.9%에 불과 ③ 혁신기업 투자 관련 자본시장인프라의 발전수준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미조성 □ 비상장기업의 주식관련 사무의 투명성·신뢰성이 낮고 사후관리 등이 불편하여 비상장기업 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\* 비상장기업의 증권발행・유통・및 투자집행이 모두 수기로 처리되어 누락, 오기, 위 • 변조 위험에 노출되고 신뢰성이 저하

□ 비상장기업 투자에 따른 회계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

# Ⅲ. 정책과제

# 기본 방향

- ◇ 자본시장이 경제 활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시장 및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인프라를 재정비
  - 기업이 **창업부터 성장**까지 자본시장을 통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**공백 없는 자금조달체계**를 마련
  - 유니콘 기업 등의 **상장**을 촉진하고 초기 투자자들의 **중간 회수시장** 및 일반투자자를 위한 **공모펀드**를 활성화
  -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다 **투명 하고 선진화된 자본시장 인프라**를 구축

#### 추진 전략

#### 추진 과제

①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금조달체계 구축

#### <초기단계>

- ■크라우드펀딩 활성화
-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지원기능 강화 <성장단계>
- 기업성장투자기구제도 도입
- 증권사의 중소·벤처기업 자금공급 활성화
- ■고수익 회사채시장 활성화
- 자산유동화시장 제도 개선
- ② 회수시장 및 공모펀드 확성화
- 혁신기업의 IPO 촉진
- 해외주식투자수요의 국내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
- K-OTC 확성화
- 공모펀드 활성화
- ③ 혁신기업 투자 신뢰성 제고 및 인프라 정비
- ■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개설
- ■비상장기업가치 회계처리 기준 제시
- 혁신기업 공시역량 강화
- ■사모펀드 역할 재정립

# 1.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자금조달시장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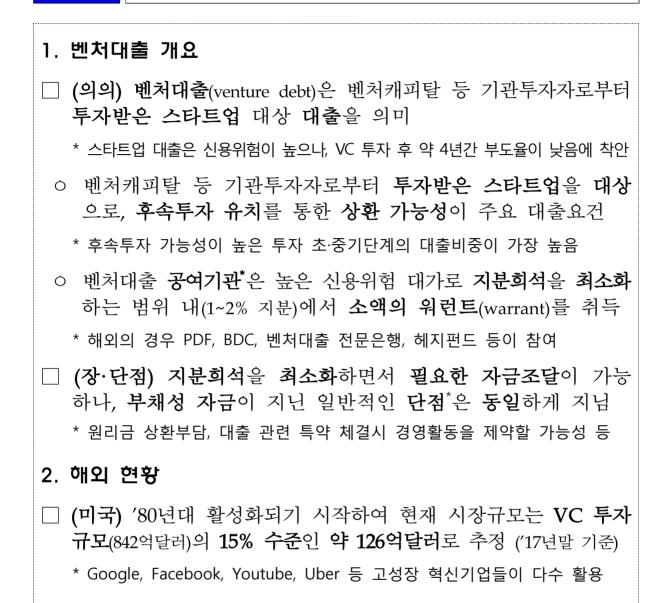
# 가. 초기단계

- ① **혁신기업**이 창업단계부터 **다수의 투자자**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활성화
  - (현행)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만 활용되도록 기업 업력(창업 후 7년)
    및 조달한도(연7억원→15억, '19.1월) 등을 엄격하게 설정
  - (개선) 크라우드펀딩이 시리즈A단계의 성장자금 조달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
  - (대상기업)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\*(자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) 및 상장 3년이내인 코넥스 기업(자본법 시행령 개정, 4.1일 시행예정)의 그라우드펀딩 허용
    - \* (현행) 업력 7년이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→ (개선) 모든 중소기업
  - (자금조달) 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한 자금조달 확대방안\* 검토
    - \* 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(15억+a 조달 가능), 광고규제 완화 등
  - **(중개업자 역할 강화)** 발행기업 **경영자문\*·후속투자** 및 旣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**매매중개** 허용 등
    - \* 발행기업 경영자문 허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
- ②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지원기능 강화
  - 증권회사가 혁신기업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과의 접점이 필요 ➡ 증권회사에 **액셀러레이터 겸업**을 허용
    - \* 창업자 선발 및 Seeding투자,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등의 역할 (근거: 중소기업창업법)
    - \*\* 관련 규정(금융투자업규정) 개정 이전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엑셀러 레이터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
# 나. 성장단계

- ① '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\*(BDC)'를 도입하여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
  - \*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
  - 기존 Vehicle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·사모 편드 하이브리드 형태로 설계하고, 다른 Vehicle의 전문성도 적극 활용
    - \* ① 자산운용사 + 증권사, VC 등 다양한 플레이어 진입 허용
      - ② 공모펀드 보다 완화된 운용규제 적용(대출·차입 허용, 동일기업 투자한도 확대)
      - ③ 운용사는 BDC자산의 5% 이상을 출자하여 5년 이상 의무보유
- [2] **증권사**의 중소·혁신기업 자금공급 제약요인을 완화
  - (현행) 다양한 건전성 규제와 여신업무 수행제한 규제로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측면
    - \* ① 일반증권회사의 대출·사모사채는 NCR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
      - ② 대형사는 레버리지비율(1,100%), 여신한도규제(200%)로 리스크가 높은 벤처대출을 꺼림
      - ③ 증권사에 허용되는 기업금융관련 대출의 범위가 협소하여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함
  - (개선) 증권사가 건전성규제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중소 기업\*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    - \* 명목상 중소기업인 SPC 및 부동산 관련 기업 등 제외
  - i) 벤처대출\*을 증권회사의 **겸영업무**\*\*에 추가하고, **일정 규모\*\*\***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(NCR) 산정시 **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** 
    - \* VC 투자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대상 대출(첨부 참조)
    - \*\* 현재는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만 허용
    - \*\*\* 예) 일반증권사 자기자본의 50%, 중기특화증권사 자기자본의 100%
  - ii) M&A 리파이낸싱,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
  - iii)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, 조정하여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
    - \* ① 중소·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 축소
      - ② 레버리지비율을 일부 완화하되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하는 방안 강구
      - ③ 중소·벤처기업 투자시 NCR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(5%)을 상향 조정

# <mark>참 고1</mark> │ 벤처대출 도입 필요성



# □ (EU) 2000년대 이후 시장규모가 급증하여 현재 전체 VC 투자 규모(190억달러)의 **5% 수준인 약 10억달러**로 추정 ('17년말 기준)

#### 3. 도입 필요성

- □ 기업 성장과정에서 자금수요는 지속 증가하나, 증자의 경우 경영권 희석 우려가 있어 부채성 자금조달도 일정부분 필요
  - 반면, **초기기업**의 경우 담보부족, 매출·이익 미발생 등으로 인해 일반 은행을 통한 대출자금 조달이 어려움
  - ➡ 전문성과 위험인수역량을 지닌 증권회사가 부채성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

#### ③ 스케일업 기업 고수익 회사채 시장 활성화

- (현행) 스케일업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없이 발행·유통할 수 있는 고수익 회사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
  - \* 비상장 국내기업 채권 발행(조원, '19말): (QIB) 8.3, (사모CB) 0.11
- (개선) 금융회사들의 QIB 채권투자 제약요인\*을 해소하고 전문 투자자 전용 고수익 소액 사모사채 시장을 개설
  - \* (은행) 보증기관 출연금 산정 대상인 기업대출 금액에 포함 (보험)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로 취급 (증권) 신탁계정에 편입 제한 (상호금융) 투자금지
- i) 금융회사의 QIB채권 투자 제약 요인 해소
  - \* QIB채권이 "유가증권"이 아닌 "대출채권"으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투자금지 규제 또는 건전성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
- ii) 전문투자자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중소·혁신기업 사모사채 발행·유통시장을 개설
  - \* 전문투자자 사이에만 유통되는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, 금투협에 발행·유통 정보를 집중하여 게시

## 4 건전한 자산유동화 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개편 추진

- (현행) 자산유동화제도 도입(′%년) 이후 시장여건이 변화하였으나, 법 개정 지연 등으로 제도개선 요구\*가 많음
  - \* ①유동화자산, 구조가 정형화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미흡 ②등록·공시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가 크게 증가하여,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③최근 이루어진 선진국의 제도정비를 반영하지 못하여 글로벌 규제정합성 부족
- (개선) 자산유동화의 기업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유동화 시장의 건전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편 추진
- i)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
- ii) 중소기업 등의 매출채권·회사채, 지식재산권·장래자산 등이 폭넓게 유동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\*
  - \* 예) 저신용 매출채권 등의 pooling이 용이하도록 SPC가 직접 다수기업으로 부터 채권을 매집할 수 있는 Multi-Seller 유동화 허용
- iii) 투자접근성 개선을 위해 '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' 마련

# 2. 회수 시장 및 공모펀드 활성화

## 가. 혁신기업의 IPO 촉진

- □ (현황) 국내 IPO시장의 경우 주관사의 재량범위가 좁아 혁신 기업을 발굴하여 상장하도록 지원할 유인이 부족
  - \* 가격결정을 위한 수요예측, 주식배정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적규제 적용
  - **엄격한 인수업무제한 규제**\*로 인해 증권회사들은 혁신기업을 발굴하더라도 상장전(pre-IPO) 고유재산 투자가 제한
    - \* 본인이 5%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IPO업무가 제한(특수관계인 합산 10%)
  - ▶ 비재무요건 상장이 지속 증가하는 등 혁신기업 상장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규모나 조달금액이 소규모인 상태
    - \* 코스닥 비재무요건 상장기업 수(개, %): (17)7, 8.9% (18)22, 27.2% (19)24, 30.8%
    - \*\* 코스닥 IPO기업 자본금 규모(중위값, 억원): (17)235.5 (18)186.8 (19)206.1
    - \*\*\* 코스닥 IPO기업 신규자금조달 규모(중위값, 억원) : (17)170.8 (18)204 (19)180
- □ (개선) 혁신기업이 적정 가격으로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개시장(IPO)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
  -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 등을 통해 IPO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**코너스톤인베스터\* 제도**를 신속하게 도입
    - \*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 하기로 확정하는 제도로, 공모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공모 성공이 촉진
  - 대상회사의 규모·업종을 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추진
  - 수요예측제도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, 최초 가격산정과정
    에서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
    - \* ① 증권신고서 제출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간 정보교환 허용 ② IPO주관사가 가격발견 기여도가 낮은 투자자 배제 허용 ③ 기관투자자들의 단기매매차익 추구 행위 방지

- 증권회사의 **주관업무**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지분 **보유** 비중(5%)을 중소기업에 한하여 상향 조정(예 : 10%)
  - \* (美) 지분율 10%이상 보유 회사, (日) 자회사에 한하여 인수업무 제한
- 성장성·시장성(시가총액)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 기술평가를 간소화\*하여 유니콘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
  - \* (현행) 복수기관으로부터 최소 A & BBB 이상 획득 → (개선) 단수기관으로부터 A획득

#### 나. 해외주식투자 수요의 국내 전환 기반 조성

- □ (현황) 高위험·高비용인 해외주식(ETP포함) 매매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\* 해외주식 매매금액(억\$) : ('16)15.1 ('17)24.3 ('18)36.3 ('19.1~10)39.3
- □ (개선)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여건을 조성
  -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
    수 있도록 ETN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
  - 증권사가 **직접 지수**를 **개발**하고 이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**지수 투명성・적정성**을 전제로 **자체지수산출**을 **허용** 
    - \* 지수산출기관에 대한 사전적 규제 대신 증권사(ETN발행사)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지수산출 관리책임 강화

# 다. K-OTC 활성화

- □ (현황) 제도화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-OTC Market이 운영 중이지만 기업 자금조달 부담 요인\*으로 기업 참여가 부진
  - \* K-OTC에서 투자자간 거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매출행위로 간주되어 해당기업은 사모자금 모집이 불가하고 공모를 통해서만 자금조달 가능
  - 거래기업은 **135개**, 일평균거래대금은 **40.3억원** 수준(코스닥의 0.1%) 으로 미국 OTC(기업29,348, 일평균거래대금 나스닥의 1.3%)에 비해 미흡

- □ (개선)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여 초기 투자자의 중간 회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,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정비
  - 혁신기업의 K-OTC시장 거래 제약 요인 해소\*를 통해 기업 참여를 촉진 (거래기업수 74사 증가(+55%) 예상)
    - \*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-OTC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'매출'에서 제외하여 K-OTC 거래이후에도 사모자금조달을 허용
  - 비상장주식 시장에도 시세조종·미공개정보 이용 등\*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
    - \* 현재 사기적 부정거래 외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규제는 거래소시장에만 적용

# 라. 공모펀드 활성화

- □ (현황) 공모펀드 산업의 경쟁력 부족, 투자자 신뢰 저하 등으로 공모펀드 시장의 성장이 정체\*되고, 수익률도 미흡\*\*한 수준
  - \* 수탁고(조원) : ('15) 213.8 → ('16) 212.2 → ('17) 217.5 → ('18) 213.6 → ('19) 242.3
  - \*\* 연수익률(%) ('15) 2.3  $\rightarrow$  ('16) 1.3  $\rightarrow$  ('17) 10.3  $\rightarrow$  ('18)  $\triangle$ 6.1  $\rightarrow$  ('19) 6.8
- □ (개선) 상품·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, 운용사 경쟁력 제고 및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 유도 등 추진
  - (상품 다양화) 신규 상품 도입 및 기존 상품의 다양화\*\*
    - \* 예) 외화표시 MMF, 주식형 액티브 ETF 등
    - \*\* 예) 지수산출기관 확대(증권사 등)를 통한 다양한 ETF 출시 유도 등
  - (판매채널 다양화) 투자자 관점의 펀드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채널\* 출연 촉진
    - \* 예)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기능강화(맞춤형 자산관리 등), 통합자문 플랫폼(다양한 판매사를 비교하여 투자자문), 마이데이터 활용 판매채널 등 → 업권협의를 통해 구체화
  - (운용사 경쟁력 제고) 펀드 해외판매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
    - (해외판매)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개정
    - (규제개선) 보고·공시 등을 합리화\*하여 운용사 업무 효율성 제고
    - \* 예) 불필요한 보고사항 축소(예. 자본금 증가시 수시보고), 중복적 공시·보고 일원화 등
  - (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 유도) 다양한 성과보수 유형을 도입하고, 운용사의 시딩투자(운용사가 펀드에 자기자본 투자) 유인 제고\*
    - \* 예) 일정수준 이상 시딩투자시 운용사가 투자자와 이익을 공유하므로 운용규제 완화

# 3. 혁신기업 투자 신뢰성 제고 및 인프라 정비

## 가. 모험자본투자 Fundnet(통합 사무관리 플랫폼) 개설

- □ (현황) 대부분이 "非상장·非예탁회사"인 창업·혁신기업은 주식 사무의 투명성·신뢰성이 미흡하고 투자 사후관리 등이 불편<sup>\*</sup> 하여 모험자본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
  - ※ 사례: 비상장투자 상위 4개 신탁사(NH, 산은, 기은, 하나)는 GP로부터 연간 약 10만건 가량의 운용지시를 이메일·FAX 등으로 전송받아 담당 직원이 수기로 업무처리 중
- □ (개선)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
  -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던 비상장사의 **증권발행, 주주명부관리** 등을 **전산화·표준화**\*하여 비상장투자의 **신뢰성·효율성 제고** 
    - \* [현행] 표준양식이 없는 '주권미발행확인서'를 발급·유통하나 위·변조에 취약 하고 거래가 불편(회사방문 필요) → [개선] 온라인을 통해 발급·교체 가능
  - 벤처투자 참여자(LP, GP, 신탁사 등)간 업무(운용지시 등)를 효율화
    - \* [현행] 신탁사는 GP로부터 연간 수만건의 비상장 투자 운용지시를 이메일 등으로 전송받아 담당직원이 수기로 업무처리 중 → [개선] 플랫폼을 통해 전산화·자동화

## 나. 비상장기업가치 회계처리 기준 제시

- □ (현황) 新금융상품 기준 시행('18년)으로 비상장회사 주식은 공정가치 평가\*가 원칙이어서 평가 관련 불확실성 발생
  - \* 비상장 주식은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고 제한된 특정상황에서만 원가로 측정 가능
- □ (개선)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 완화 차원에서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
  - 1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\*을 추가로 제시
    - \* 원가를 쓸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(자산규모 120억원 미만 투자기간 2년 이하 등)을 제시
  - ②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 등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제공

# 다. 혁신기업 공시제도 정비

- □ (현황) 혁신기업들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  - \* '19년 공시위반·불성실공시 법인(개, 비중): (코스피) 20, 11.5% (코스닥/코넥스) 153, 88.5%
- □ (개선)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・ 혁신기업 등의 공시역량 강화<sup>1</sup> 및 공시제도 개선<sup>2</sup> 추진
  - ① 중소·혁신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시역량 부족으로 공시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선보완
    - \* 불성실 공시 제재만으로는 주의 환기만 가능하고 공시역량 확충이 어려운 한계 보완
  - ② 투자자가 공시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
    - \* (예) 회사규모 등 특성에 맞게 공시항목 조정, 중복되거나 유용성이 낮은 공시항목 재정비

#### 라. 사모펀드 역할 재정립

- □ (현황)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·성장·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 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, 최근 일부 부작용\* 노출
  - \* 불완전판매, 유동성 관리실패 및 운용상 위법·부당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
- □ (개선)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,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 도입
  -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운용사 내부통제 및 판매사·수탁기관· PBS의 감시·견제 기능을 확충하고,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
  - **투자자 보호에 취약**한 **일부 운용구조**\*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
    - \* ①만기 미스매치→ 유동성 규제, ②복충·순환 투자구조→ 순환투자 금지 및 관련 정보제공 강화, ③TRS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→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보호 강화
  -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금융당국 검사·감독 강화
  - ※ 3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 확정

# Ⅳ. 향후 추진 일정

- □ 중소·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
  -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과제\*는 발표 즉시 시행
    - \* ①증권사에 엑셀러레이터 허용, ②비상장기업 가치평가기준 제시
  - 세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진척된 3개 과제\*는 상반기 중 법령 개정 절차를 개시
    - \* ①BDC도입, ②고수익회사채 시장 활성화, ③K-OTC시장 활성화
  - 그 외의 과제는 각각 **3월 중** 또는 **상반기** 중 세부방안을 발표 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

추 진 과 제		추 진 일 정
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금조달체계 구축	크라우드펀딩 활성화	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
	증권사에 엑셀러레이터 허용	3월부터 신청 접수
	기업성장투자기구제도 도입	상반기 중 법안 국회 제출
	증권사의 중소·벤처기업 자금공급 활성화	3월말 개선방안 발표
	고수익 회사채시장 활성화	상반기 중 입법절차 개시
	자산유동화시장 제도 개선	상반기중 개선방안 발표
회수시장 활성화	혁신기업의 IPO 촉진	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
	해외주식투자수요의 국내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	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
	K-OTC시장 활성화	상반기 중 입법절차 개시
	공모펀드 활성화	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
혁신기업 투자 신뢰성 제고 및 인프라 정비	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개설	연내 시범서비스 개시
	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기준 제시	기 발표('20.2월)
	혁신기업 공시역량 강화	3사분기 개선방안 발표
	사모펀드 역할 재정립	3월 중 최종방안 발표